##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28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 박홍배 · 윤준병 · 김태년

맹성규 • 이용선 • 김태선

이광희 • 박 정 • 이용우

서미화 · 김영환 · 정진욱

이재정 · 이정헌 의원

(14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 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 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.

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「산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에 따른 공원 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, 산사태 등 각종 산 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·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 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·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 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기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,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·대비·대응 및 피해 복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할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###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0호 중 "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"을 "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(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10. "산림재난방지기관"이란 산	10		
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			
행하는 기관으로서 <u>지방자치</u>	<u>지방자치</u>		
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.	단체, 지방산림청 및 「자연공원		
	법」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		
	(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		
	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		
	방지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)		
11. ~ 14. (생 략)	11. ~ 14. (현행과 같음)		